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0

2016년 12월 1일 행 정 자 치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 출 일 : 2016년 10월 31일 다. 회 부 일 : 2016년 11월 3일

라. 상 정 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 용 복)

가. 제안 이유

-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 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법 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9,757,945천원

(인건비 348,306, 운영경비 270,700, 사업비 9,105,106, 예비비 33,833)

다.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라.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개정)됨에 따라¹⁾, 2017년 (재)서울장학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재)서울장학재단은 관련 법령(「민법」제32조²),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회가 필요로하는 우수인재의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청소년들의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음.

^{1)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2)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가. 서울장학재단 현황 및 사업 실적

○ (재)서울장학재단은 2008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고, 2010년 3월 부터 재단의 독립운영을 시작하여 15개의 장학사업을 시출연금(5개)과 기부금·운영 소득(10개)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장학재단의 연혁 >

2007 : 서울장학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2008: 장학재단 조례시행, 설립허가, 창립총회

2010 : 서울장학재단 독립운영 개시

2013 : 이경희 2대 이사장 취임 2014 : 문미란 3대 이사장 취임 2015 : 문미란 4대 이사장 재임

- 2016년도 (재)서울장학재단의 실행예산은 127억7천9백만원으로 시출연금 101억5천6백만원, 기부금수입 32억2천9백만원, 전기이월금 20억6백만원, 이자수익 2억9천만원 등으로 구성됨.
- 시출연금 사업은 서울시 소재 고교,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비지원, 하나고 장학생 학비지원, 청소년 재능장학생을 지 원하고 있음.
- 2017년 (재)서울장학재단의 서울시 출연금은 장학사업비 91억 5백만원과 경상운 영비 6억 5천 3백만원 등 총 97억 5천8백만원 규모임.

< 서울장학재단의 2017년 서울시 출연금 내역 >

	시골경약제단의 2017년 시골시 골	120 네그 /
	소	계 9,757,945천원
장학사업비		9,105,106천원
	대학분야 저소득층 학생	3,700,000천원
	대학분야 공익인재 학생	300,000천원
	서울평화희망장학금	20,000천원
	고교분야 저소득층 학생	4,525,000천원
	고교분야(하나고) 저소득층 학생	144,000천원
	청소년 재능분야	300,000천원
	장학생 선발경비	48,092천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시스템 고도화 등	68,014천원
장학재단 경상운영비 등		652,839천원
	운영경비	270,700천원
	인건비	348,306천원
	예비비(경영평가성과급)	33,833천원
	-11-11-1(10 0 0/ 0/ 1 0 m) H	00,000 12 12

나. 서울장학재단 출연의 필요성

○ 미래 핵심인재의 양성, 교육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서울시의 목적과 서울 장학재단이 추진하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지원하고,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는 서울장학재단의 사업목적을 감안하여 볼 때, 서울장학재단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이번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불용의 문제, 민간기탁금 유치 미흡의 문제, 반납된 장학금 관리부실의 문제 등이 지적된 바 있고, 2015년 감사관실 감사에서도 규정의 미비, 재산관리 및 여유자금 운영소홀, 장학생 선발 업무 부정적, 조직·인사관리 운영 미흡, 선발체계 적정성 취약 등이 지적되었음.
- 이에 지적사항 개선에 대한 평가, 자체사업 및 기부금·기금운용사업의 장학금 지원 규모 확대 여부, 전기이월금 규모의 적정성 및 활용방안의 점검, 시출연금 활용 확대방안 등 다수의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자구노력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한편, 서울시는 2016년 9월 '장학금 지급대상 확대'와 '서울장학재단과 서울시의 재정을 고려한 출연액 결정'을 주요 내용으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재)서울장학재단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음.
- (재)서울장학재단의 장학사업이 사실상 서울시 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울장학재단의 적정 기금확보방안, 장학사업이 서울시의 일 반회계 또는 기금사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검토가 요망된 다고 하겠음.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 6. 토 론 요 지 : 없 음.
-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8명, 전원찬성).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460

제출년월일: 2016년 10월 31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장학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장학재단

○ 관련법령

- 법 령 : 「민법」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조 례 : 「서울특별시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9,757,945천원

(인건비 348,306, 운영경비 270,700, 사업비 9,105,106, 예비비 33,833)

나. 주요사업

- 공평한 교육의 기회제공·우수인재 발굴을 위한 장학사업
- 저소득가정 지원 장학사업: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한 등록금 지원
- 공익인재 대학생 지원 및 민간기탁 연계 장학사업
- 미래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 인재지원 및 교류 활성화 : 멘토링, 특강, 자원봉사활동 연계사업
- 홍보사업 : 장학사업 및 장학생 스토리 홍보를 통한 민간자원연계 지원

다. 출연의 필요성

○ 장학사업을 통해 저소득 학생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립된 서울장학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우수 학생을 발굴·육성하고, 예·체능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및 공익활동으로 사회의 모범이 되는 학생을 지원함으로써 미래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교육정책담당관 교육정책팀 한동석(☎2133-3913)